



2025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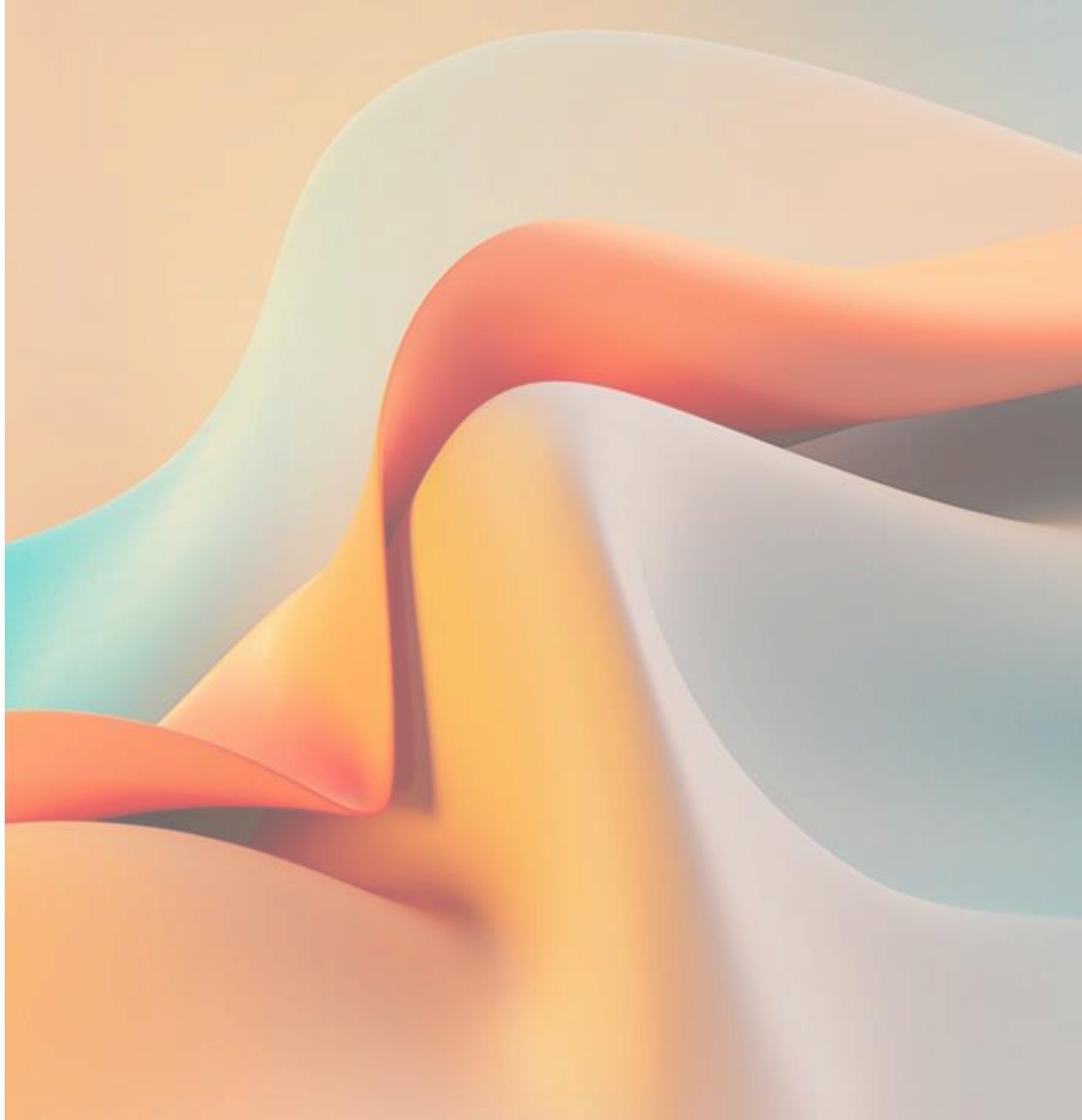
-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세무사 조희래

강의자료 다운로드

<https://yredul.net> 접속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전문가 칼럼” 의 “조
휘래 세무사” 클릭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실무.pdf” 다
다운로드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

이 경우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이 외상매출채권이므로 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대손상각 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가

2020. 1. 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49 21.05.31.)

(회수기일 : 별도 규정과 예규가 없으며, 이는 계약서등에 의한 받기로 한날,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임)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는 즉,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결산시 반영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되는 선택적 항목이다.

같은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난 이후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판단에 따라 대손상각 처리하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 때 대손세액공제 미 적용시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한다.

같은 논리로 위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도 2년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상각은 결산반영한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대손세액공제는 2년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 반영 시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또한, 동일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대손상각의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손상각의 경우 손금반영 시점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단일 세율항목으로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부도 발생 어음 등 및 회수기일 2년이상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은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만약 6개월이 경과한, 2년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에 반드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의 판단시 회수기일은 채권자의 상황에따라 모두 달라 지기 때문에 확정신고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결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을 준용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회수불능을 판단하여 대손상각 판단시점에 손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역시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상법, 민법, 어음법 등 타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신고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EX) 2021년 6월 28일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1) 2024년 6월 26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2) 2024년 10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 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됨.

(상법 및 민법상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2024년 6월 27일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신고조정 사유로 변경되기 때문)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3) 2025년 12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상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대손상각은 2024년도 손금산입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며,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분으로 경정청구 가능.

주의! 타법률상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발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닌 채권회수절차를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는 완성 되지 않습니다.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지급금액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업포괄양수도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아닐 경우 퇴직금의 승계는 불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모두 퇴직금 지급 및 비용처리 하여야 함.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퇴직금(추계액)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퇴직금추계액으로 부채로 승계 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 퇴직금을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법인의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추 후 지급시 충당부채 상계항목으로 비용처리 되지
아니하며 법인 입사 후 발생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는 비용처리 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 가입시 법인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기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부담
액이 발생되어 손실이 커질수 있으므로 부채 승계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기발생된 퇴직금은 5천만원이며,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근속연수는 평균
5년이였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법인에서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개인사업자

차) 퇴직급여 5천만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법인사업자

차) 영업권 등 5천만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진행 함.

3년 후 해당 직원 3명 전원이 퇴사하였으며,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직전 3년 월 평균 급여는 4백만원이며, 근속연수 총 8년으로 3.2천만원 * 3명 = 9.6천만원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미 가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대) 현금,예금 9.6백만원
 퇴직급여 4.6천만원

✓ 비용처리는 4.6천만원이 됨

확정기여형(DC형) 법인전환 후 바로 가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대) 현금,예금 5천만원
차) 퇴직급여 3.6천만원 대) 현금,예금 3.6천만원

✓ 총 비용은 3.6천만원으로 실 부담금액이 감소함. (매년 12백만원씩 3년간 퇴직급여 비용처리)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

확정급여형은 신고조정사항으로 실제 불입한 연도에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유보) 하며, 신고조정 누락한 경우 다음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 다만, 실 불입한 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예시) 첫째 퇴직연금(DB) 총 2천만원 불입하였으나, 당해연도 퇴직급여추계액은 1천만원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만원 대) 현금,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다음해 퇴직연금 불입액은 1천만원이며, 퇴직급여 추계액은 1천5백만원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대) 현금,예금 1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백만원 (-유보)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만약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원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만약 퇴직급여 추계액이 3천만원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 첫째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한도 손금산입 가능함.

만약 첫째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액이 없었다 하여도 해당 연도 불입액 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할 수 없었던 금액까지만 당해연도 불입금액이 아니어도 손금산입 가능함.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확정급여형 불입 및 신고조정 중 직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 비용처리 세무처리 방안

예시) 확정급여형(DB) 총 불입액은 누적기준 5천만원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대) 예금 등 5천만원

* 퇴직금추계액이 7천만원 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유보)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현재 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유보) 금액이 5천만원 누적 계상되어 있을 것임.

2023년 12월 1일 직원A의 퇴사로 총 퇴직금 3천만원 지급시

1) 회사가 퇴직연금불입액에서 모두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3천만원 (유보)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회사가 퇴직연금불입액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1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이를 한번에 분개하면,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현금 및 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천만원 (유보)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5천만원 이고 퇴직급여추계액이 3천만원 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대) 현금 등 5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유보)

4) 직원A에 대한 퇴직금이 3천만원이고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액에서 모두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8백만원 (유보)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결국 비용처리는 $30,000,000\text{원} - 18,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이 된다.

애초 총 불입 퇴직연금 중 60%를 신고조정에 의해 비용처리 했으므로 실 퇴직금 지급시 연금 인출금액도 동일 비율로 60%는 기 손금산입한 금액의 인출로, 40%는 당해연도 추가 비용으로 보아 적용한다.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 직원A에 대한 퇴직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현금 및 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6백만원 (유보)

결국 비용처리는 $30,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 24,000,000\text{원}$ 이 된다.

만약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을 인출하지 않고 전액 별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전체가 비용처리 된다.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 퇴직급여 지급 후 다음연도 말 까지 1년간 추가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1천만원이 있고 당해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이 29백만원일 경우를 가정하고, 직전년도까지 총 불입액 5천만원이고 추계액은 3천만원 이었을 때, 직전년도 직원A 퇴사로 1천만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재무상태표상 남아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4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잔액은 24백만원임. 당해연도 추가 불입액 1천만원으로 재무상태표 상 총 퇴직연금운용자산 가액은 5천만원, 퇴직급여추계액 29백만원 이므로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백만원 (-유보)

만약, 추계액이 24백만원 이라면, 세무조정) 없음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 당해연도 불입금액 1천만원은 추계액을 한도로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가능하나 한도 초과로 인하여 당해 불입금액이 있음에도 손금산입 못하였으므로

차기연도에 불입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계액 한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그러나 불입한 당해연도에 추계액 기준 한도 미달로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함에도 신고조정을 통한 비용처리 누락의 경우라면 차기연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장이 연금계약 해지 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기 불입 DB형은 총 5천만원이며, DC형 가입 시점 퇴직급여추계액은 5천만원이다.
DB해지 후 DC형으로 일시에 5천만원 불입하였다.)

차) 예금 5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차) 퇴직급여 5천만원 대) 예금 5천만원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세무조정)

1) DB형 불입시점에 모두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유보)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 만큼인 5천만원 전체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유보)

2) DB형 불입시점에 3천만원만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유보)

결국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 5천만원(DC형 불입금액) 비용처리 되지만 세무조정상 기존 DB형 불입금액 기 손금 분 추인하여 3천만원 손금불산입 되므로 세법상 비용은 당기 기준 2천만원이 되는 것임.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DB형 불입시점에 별도 신고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이 없음..

즉,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예금으로 전환되는 것 뿐이며,

이를 일시에 DC형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 전액이 당기 비용에 해당함.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현금구매 및 장기할부 취득 시 (업무사용비율 100%)

취득원가 80,000,000원(부가세포함)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0원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누계액 32,000,000원

처분가액 44,000,000원(부가세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원 발행

장부상 처분손익은 ?

차) 보통예금 44,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0원

대) 차량운반구 8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000원

 처분이익 24,000,000원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세법상 처분손익은 ?

처분이익 24,000,000원(장부상) - 한도초과 32,000,000원(손금산입) = -8,000,000원(손실)

* 처분손실 연간한도내 이므로 한도초과 세무조정 없음.

* 금융리스의 경우 동일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구성 됨.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32,000,000원 (-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 없음.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운용리스 취득 시 (업무사용비율 100%)

보증금 40,000,000원 / 잔존가치 40,000,000원 동일

월리스료 2,000,000원

감가상각상당액 연간 22,320,000원 (7%차감)/ 감가상각한도초과액 누계액 57,280,000원 (4년)

처분가액 70,000,000원(부가세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발행

장부상 처분손익은 ?

차) 보통예금 73,000,000원

대) 보증금 4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처분이익 30,000,000원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세법상 처분손익은 ?

처분이익 30,000,000원(장부상) - 한도초과 57,280,000원(손금산입) = -27,280,000원(손실)

*처분손실 연간한도 8,000,000원 초과분 19,280,000원 손금불산입(인출) 관리.

매년 8,000,000원씩 손금추인.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57,280,000원 (인출)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19,280,000원 (인출)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매년 8백만원씩 손금 추인.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예시

(1) 국내 제조업 개인 A사는 2020년 7월1일 업무용승용차(5인승 승용차)를 운용리스 계약하였다. 리스 계약 조건은 36개월이며, 보증금과 잔가를 30%로 동일하게 맞추고 보증금 3천만원을 불입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포함하지 않는 계약 조건이다.

월 리스료는 2,300,000원이다.

(2) 2023년 6월 30일부로 운용리스 종료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로 해당 차량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승계취득시 보증금과 잔가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취득원가는 3천만원이며, 차량등록세를 포함한 이전비용으로 3,000,000원이 지출되었다.

(3) 2025년 7월 1일 해당 차량을 15,000,000원(VAT별도)에 매각하였다.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매년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용사용비율은 100%이고, 운행일지는 모두 작성하였다.

(차량관련 비용 한도는 감가상각비 8백만원 + 유지비 7백만원 = 15백만원이다.)

* 리스료 중 수선비로 구분하는 7%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2020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연 도	연간 총 리스료(원)	연간 운행비용(원) (보험,자동차세, 유류비등 포함)
2020.7.1.~12.31.	13,800,000	4,500,000
2021	27,600,000	5,800,000
2022	27,600,000	6,500,000
2023. 12. 31.	13,800,000(리스료), 3,300,000(감가상각비)	6,000,000
2024	6,600,000 (감가상각비)	6,500,000
2025. 06. 30.	3,300,000 (감가상각비)	3,200,000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운용리스료 13,800,000 대) 예금 13,800,000

차) 차량유지비 4,500,000 대) 예금 4,5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18,3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9,800,000원 (인출)

* 감가상각비 한도는 4백만원임

*차량유지비의 경우 연간 한도계산시 한도액은 7백만원이나, 운행일지 작성 및 업무비율100%로 전액 인정.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2021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운용리스료 27,600,000 대) 예금 27,600,000

차) 차량유지비 5,800,000 대) 예금 5,8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33,4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19,600,000원 (인출)

연간 리스료 한도액 8백만원 초과금액은 손금부인되나, 차량유지비는 연간 한도 7백만원 중 당기 부족액 1,200,000원이 있으므로 한도내 과거 손금부인액이 있다면 손금 추인함.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2022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운용리스료 27,600,000 대) 예금 27,600,000

차) 차량유지비 6,500,000 대) 예금 6,5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34,1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19,600,000원 (인출)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차량유지비 6,000,000 대) 예금 6,000,000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운용리스크 한도초과액 49,000,000 (인출)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9,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9,100,000 (유보)

* 총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 유보 잔액은 23년말 기준 58,100,000원 임.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 202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6,6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600,000

차) 차량유지비 6,500,000 대) 예금 6,5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400,000 (-유보)

* 총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 유보 잔액은 24년말 기준 56,700,000원 임.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 2025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차) 차량유지비 3,200,000

대) 예금 3,200,000

차) 예금 16,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200,000
 처분손실 4,800,000

대) 차량운반구 33,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000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장부상 25년도 총 비용은 감가상각비 3,300,000원 + 차량유지비 3,200,000원 + 처분손실 4,800,000원 = 11,300,000원 임.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6,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52,800,000원 (인출)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은 장부상 처분손실 4,800,000원과 보유 기간동안 감가상각 부인액 총 56,000,000원을 합한 총 처분손실 60,800,000원 중 연간 처분손실 인정한도인 8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인출) 처분한 것으로 해당 금액은 연간 8백만원을 한도로 추인한다.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 만약, 처분가액이 5천만원(VAT별도) 일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차) 차량유지비 3,200,000 대) 예금 3,200,000

차) 예금	55,000,000	대) 차량운반구	3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0
처분이익	30,2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00,000원 (-유보)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6,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17,800,000원 (인출)

장부상 차량가액 잔액은 19,800,000원으로 이를 5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장부상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30,200,000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법상 해당 차량의 가액은 19,800,000원 + 56,000,000원 = 75,800,000원으로 여전히 처분에 따른 손실이 25,800,000원 발생한다.

세법상 연간 처분손실 8백만원씩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처분 당해연도에 8,000,000원의 처분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17,800,000원을 처분손실 한도초과로 부인하고 차기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8백만원씩 손금 추인하여 상계한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근로기간 1년 이상

✓ 증가인원 감소시 추징 사후관리



✓ 삭제

✓ 만 34세까지 청년



✓ 계약시 청년이면 최대 4년간 청년 간주
(2025년 최초 입사자분 부터 적용)

✓ 1인당 공제액 연차별 동일



✓ 연차별 점진적 증가

✓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



✓ 2026. 2.27. 이후 최초신고분부터 변경된
계산방식 적용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2026년 최초 공제분부터)

2024년 12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모두 2024년 이전 입사자, 청년외)

2025년 7월10일 신규 직원 고용 (청년외)

2026년 12월31일 현재 근로자 변경 없음.

2027년 9월 10일자 기존직원 1명 퇴사 및 9월 25일 신규직원 입사(청년외).

202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변경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및 세액공제 적용여부

2024년 상시근로자 5명

2025년 상시근로자 5.5명 으로 0.5명 증가 ----> 1차공제 4,250,000원 (850만원 * 0.5)

2026년 상시근로자 6명 으로 0.5명 증가

2025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4,250,000원

2026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증가 하였으며, 해당 증가인원이 1년이상 근무요건 충족하였으므로 1차공제 2,000,000원 (400만원 * 0.5)

2027년 상시근로자 6명 으로 전전년(2025년) 및 직전년(2026년) 근로자수 유지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5년 3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3차공제 4,250,000원

2026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는 하였으며, 1차공제 대상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4,500,000원 (900만원 * 0.5)

2027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증가분이 없으므로 1차공제 없음

2028년 상시근로자 6명 ---> 세액공제 적용대상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4년 12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모두 2024년 이전 입사자, 청년외)

2025년 7월10일 신규 직원 고용 (청년외)

2026년 12월31일 현재 근로자 변경 없음.

2027년 9월 10일자 기존직원 1명 퇴사 및 9월 25일 신규직원 2명 입사(청년외).

202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변경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5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4,250,000원

2026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증가 하였으며, 해당 증가인원이 1년이상 근무요건 충족하였으므로 1차공제 2,000,000원 (400만원 * 0.5)

2027년 상시근로자 **6.33명**으로 전전년(2025년) 및 직전년(2026년) 근로자수 유지

2025년 3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3차공제 4,250,000원

2026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는 하였으며, 1차공제 대상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4,500,000원 (900만원 * 0.5)

2027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0.33명 증가하였으나 근무기간 1년이상 미충족으로 1차공제는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8년 상시근로자 7명 으로 0.67명 증가 하였으나 전전년(2026년) 및 직전년(2027년) 유지.

2026년 3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며, 1차공제 대상자 유지하였으므로,
3차공제 5,000,000원 (1000만원 * 0.5)

2028년 1차공제 적용여부 ---> 직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0.67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자는 모두
해당과세기간(2028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요건 충족으로
1차공제 2,680,000원 (400만원 * 0.67)

● 논리적 모순점

위와같이 적용할 경우 2028년 0.67명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7년 0.33명이 상시근로자 증가하였으나 해당과세기간 1년이상 근속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공제세액을 줄이는 모순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4년 12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모두 2024년 이전 입사자, 청년외)

2025년 7월10일 신규 직원A 고용 (청년외)

2026년 10월10일 직원A 퇴사, 10월 20일 직원B 입사.

2027년 9월 10일자 기존직원 1명 퇴사 및 9월 25일 신규직원 2명 입사(청년외).

202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변경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및 세액공제 적용여부

2024년 상시근로자 5명

2025년 상시근로자 5.5명 으로 0.5명 증가 ----> 1차공제 4,250,000원 (850만원 * 0.5)

2026년 상시근로자 6명 으로 0.5명 증가

2025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4,250,000원

2026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증가 하였으며, 해당 증가인원이 1년이상 근무요건 충족하였으므로 1차공제 2,000,000원 (400만원 * 0.5)

2027년 상시근로자 6.33명 으로 전전년(2025년) 및 직전년(2026년) 근로자수 유지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5년 3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므로 3차공제 4,250,000원

2026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는 하였으나, 1차공제 대상자 유지하지 못하였 으므로, 2차공제는 없음.

2027년 1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0.33명 증가하였으나 근무기간 1년이상 충족한 직원B가 있으므로 1차공제는 1,320,000원 (400만원 * 0.33)

2028년 상시근로자 **7명** 으로 0.67명 증가 하였으며 전전년(2026년) 및 직전년(2027년) 유지.

2027년 2차공제 적용여부 ---> 고용인원 유지하였으며, 1차공제 대상자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2,970,000원 (900만원 * 0.33)

2028년 1차공제 적용여부 ---> 직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0.67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자는 모두 해당과세기간(2028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요건 충족으로 1차공제 2,680,000원 (400만원 * 0.67)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 특이사항

1. 27년도 직원B가 1년이상 근속으로 0.33명 증가분에 적용하여 1차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 0.33명 증가분이 직원B 때문인지, 신규입사자 2명에 의한 증가분인지 구분이 객관적인 구분이 불가능함.
2. 28년도 1차공제 적용은 신규입사자 2명이 27년 9월 2일 입사한 영향으로 이중 1명은 퇴사한 기존 직원의 대체인력이되고, 나머지는 추가 증가인원이 되는 것으로 이 중 누가 대체인력이고 추가 증가인원인지 구분이 불가능함. 결국 이중 한명이 이후 퇴사시 2차 혹은 3차 공제를 절반씩 나눠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 상시근로자수 계산 및 세액공제 적용 (2025년 까지)

(1) 1차공제 후 2차공제시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하였으나 청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ex) 2021년도 총 증가 상시근로자는 6명으로 청년 3명, 청년외 3명으로 구성되었다.

$$\begin{array}{l} 2021년도 세액공제액 (1차분) = \text{청년분 } 1,100\text{만원} * 3\text{명} = 3,300\text{만원}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text{청년외 } 700\text{만원} * 3\text{명} = 2,100\text{만원}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text{총합계}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5,400\text{만원} \end{array}$$

2022년도 총 증가 상시근로자는 6명으로 유지하였으나 청년 2명, 청년외 4명으로 구성되었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1) 감소한 청년 1명은 생일이 지나 청년외로 분류 된 경우

1차공제분 추징 없음

2022년도 세액공제액 (2차분) = 청년분 1,100만원 * 0명 = 0원
청년외 700만원 * 6명 = 4,200만원
총합계 4,200만원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 감소한 청년 1명은 퇴사하였고 총원된 상시근로자가 청년외 인 경우

1차공제분 추징액 = (1,100만원 - 700만원) * 1명 = 400만원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과 공제받은 세액 중 공제받은 분에서 먼저 차감
공제분에 대한 농특세 20%는 환급신청 (또는 추징세액 총당신청)

2022년도 세액공제액 (2차분) = 청년분 1,100만원 * 0명 = 0원

청년외 700만원 * 6명 = 4,200만원

총합계 4,200만원

2023년도에 상시근로자 변동이 없다면 추가 추징세액 없으며 3차공제세액은 2차분과 동일.

* 1차분 최초 공제시 청년2명만 적용하고 1명을 선택적으로 청년외로 공제 받았다면?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ex) 2022년 개인사업자 A는 2021년대비 청년 1명 및 청년외 1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
2021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청년2명 및 청년외2명으로 총 4명 이었으며,
2022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청년3명 및 청년외3명으로 총 6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7월에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전환시점에 상시근로자는 청년3명 및 청년외 5명으로
2022년 상시근로자는 유지하였으며, 2023년도 중 추가 청년외 2명 고용증대가 있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1) 법인전환시 조특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사업포괄양수도)인 경우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1차공제분) =	청년등	1,100만원	* 1명	=	1,100만원
	청년외	700만원	* 1명	=	700만원
	총합계				1,800만원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가. 전환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1차공제분) = 청년등 1,100만원 * 0명 = 0원
청년외 700만원 * 2명 = 1,400만원
총합계 1,400만원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공제분) = 청년등 1,100만원 * 1명 = 1,100만원
청년외 700만원 * 1명 = 700만원
총합계 1,800만원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이 때 개인사업자이던 2022년도 1차 세액공제분 이월세액은 법인이 승계받으며, 20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한 2차공제분 중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공제적용받은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2차공제분으로 적용한다.

법인은 2024년도에 23년도분에 대한 2차공제 및 22년도분에 대한 3차공제를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고용인원 감소등 사후관리에 의한 기존 세액공제분 추징의 경우 모두 전환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당해연도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이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가인원에 대하여 존속하는 법인에서 적용받는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긴 하나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법인전환 시점 당해연도의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분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022년도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의 승계를 받지 못하며, 고용유지에 따른 2차 및 3차공제분도 승계받지 못한다.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 개인사업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후 잔여 공제세액 이월액은 모두 소멸한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3) 개인사업자 폐업의 경우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양수도 제외)

ex) 2021년도 상시고용인원은 총 4명(청년2, 청년외2) 이었다.

2022년도 상시고용인원은 총 6명(청년3, 청년외3)으로 상시고용인원 2명이 증가하였다.

2023년도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7월1일자로 폐업하였다.

2022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1차공제) = 청년 11백만원 * 1명 = 11백만원

청년외 7백만원 * 1명 = 7백만원

총합계 18백만원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2023년도 추정세액의 계산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 혹은 법인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 으므로 2차 공제는 없다.

또한, 1차공제분의 추정세액은 청년 0.5명 및 청년외 0.5명으로 최초 공제세액중 9백만원 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9백만원에 대한 농특세 1.8백만원은 환급)

즉,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중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월이 빠르면 빠를수록 추정세액은 늘어난다.(개인은 상시고용인원을 12개월 환산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폐업의 시점이 1개월이라도 늦을수록 추정세액은 줄일 수 있게 된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4) 개인공동사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개인사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자 2인일 경우 상시고용인원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지분율 만큼씩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5 라면 50%씩 적용하게 되며, 만약 7:3 이라면 증가인원 1명당 70%와 30%로 안분하여 각자 사업자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이월액 및 2차 3차 공제 분에 대하여도 지분율에 따라 적용한다.

만약, 사업연도 중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은 동일하므로 2차, 3차 공제분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ex) 공동사업자 A와 B는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도 상시고용인원은 4명이었으며 (전원 청년외)

2022년도 상시고용인원은 8명으로 (전원 청년외) 상시고용인원은 4명이 증가하였다.

2023년도 상시고용인원은 유지하였으나 A와 B의 지분이 60%와 40%로 변경되었다.

(2022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1차연도) A = 청년외 7백만원 * 4명 * 1/2 = 1,400만원

B = 청년외 7백만원 * 4명 * 1/2 = 1,400만원

2023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고용은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 적용되나 공제액은

A = 2,800만원 * 60% = 1,680만원, B = 2,800만원 * 40% = 1,120만원이 된다.

이 때 지분율 변동이 7/1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A = 2,800만원 * (50%*6/12 + 60%*6/12) = 1,540만원이 되며, B = 1,260만원이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2차, 3차공제) 적용시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경우 각 추징대상 연도 지분율에 따른 사업자별 추징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개인공동사업자의 인원수 변동의 경우 (공동사업자 증가 또는 감소의 경우)

교재 P332 ~ 33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6) 개인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외 단독사업장을 추가로 개시한 경우

위(4)의 A사업자가 2023년도 5월에 기존 공동사업장외 추가로 단독사업을 개시하였다.
2023년도 7/1부로 A는 공동사업의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변경된 상황에서 신규
개시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고용인원	2	2	3	3	3	3	4	4	
증가인원									2명

신규개시 사업장의 경우 5월부터 개시하였으나 연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계산은 12개월
환산 적용하므로 2023년도 상시근로자는 2명이 된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A의 직전 상시근로자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지분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8\text{명} \times 55\% = 4.4\text{명}$
신규사업장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0명이 된다.
2023년도 A의 상시근로자 증가는 다음과 같다.

	2022년도	2023년도	증가인원
공동사업장	4.4	4.4	0
신규개시 사업장	0	2	2

A는 2022년도 고용유지 하였으므로 2차공제 및 신규개시 사업장으로 인한 2명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공제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7)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의 경우

ex) A는 2021년 개인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1일 B에게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사업장을 매각하였다. 포괄승계한 B는 동종업 그대로 승계하면서 일반적인 포괄양수도 요건에 부합하는 업무관련 자산 부채를 모두 승계하였으며, 종업원 또한 승계하였다.

A는 2021년 개원당시 상시근로자 4명이었으며, 2022년도에도 유지하였으며, 2023년도 양도 당시 고용인원은 6명이었다. (모든 근로자는 청년외로 가정하자)

2021년 신규 창업으로 직전년도 고용인원 0명이었으므로 2021년도 1차 공제세액은
 $700\text{만원} * 4\text{명} = 2,800\text{만원}$ 공제 적용하였으며,
2022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였으므로 2차공제분 2,800만원도 공제 적용하였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1) B가 사업 양수에 따라 고용인원 6명을 전원 승계한 경우 (조특법 제32조 미충족)

B는 승계한 6명이 기준인원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A는 직전사업연도 상시고용인원 4명보다 많은 6명을 승계시켰기 때문에 1차 및 2차 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고용 유지한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 없으며, 사업 양도 후 폐업한 2023년도 소득세 신고시 1차, 2차분 이월세액이 남아있다면 공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 받지 못한 이월세액은 모두 소멸한다.

2) B가 사업 양수에 따라 고용인원 4명을 승계한 경우 (조특법 제32조 미충족)

위 1)과 동일하다.

IV.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3) B가 사업 양수에 따라 고용인원 2명을 승계한 경우 (조특법 제32조 미충족)

B는 승계한 2명이 기초인원이 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이 후 추가 고용이 있어야 한다.

A는 직전연도 고용인원이 4명이었으나 폐업시점에 승계한 직원은 2명으로 감소한 2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따라 1차, 2차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A가 기존 사업을 양도하면서 승계시키지 못한 2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사업을 개시하면서 고용한 경우 직전년도 고용인원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1차, 2차 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차공제는 적용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V.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적용 배제 요약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제외.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과 당해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

2.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제외.

다만,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인원증가분 추가공제 포함)과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포함) 중복 적용 불가능하며, 이월된

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V.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적용 배제 요약

ex) 2025년 창업하면서 창업감면대상이지만 창업감면 신청을 포기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하여 계산된 세액공제액을 이월시킨 경우

2026년도에 창업감면을 적용하면서 2025년 이월시킨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반대로 2025년 창업감면 적용, 2026년도 창업감면 포기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공제 및 당해공제 적용, 2027년 창업감면 적용하면서 2026년도 이월시킨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복적용 모두 가능한 것임.

V.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적용 배제 요약

3.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겹치는 연구시설통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동시 적용이 아닌 이 중 하나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4. 조특법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모두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외) 이며, 최저한세 관련 규정 및 조특법에 그 규정이 존재한다.
최저한세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적용대상여부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ex) 음식 및 숙박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소비성서비스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